

의안 번호	858	【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 검 토 보 고
----------	-----	---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· 제출자 : 2011. 11. 11(금) ·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1. 11. 16(수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1. 12. 1(목)

2. 개정이유

현 청사의 노후화 및 사무 공간 부족을 해소코자 신청사 건립 기금의 용도 중 현 청사 증축비 및 관련된 제 경비 조항을 추가 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- 가. 제명변경 : “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”
⇒ “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”
- 나. 일부조문 변경 : “신청사” ⇒ “신청사 등”(안 제1조, 제2조 및 제6조)
- 다. 청사 증축비 및 관련된 제 경비 신설(제3조 제4호)

4. 신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

- 가. 예산 조치사항 : 해당없음
- 나. 규제사무 심의 : 해당없음
- 다. 관련부처 승인 : 해당없음
- 라. 입법예고 사항 : 2011. 10. 19 ~ 11. 8(의견 없음)

6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개정안은

- 현청사의 노후화 및 사무 공간 부족을 해소코자 신청사 건립 기금의 용도 중 현 청사 증 축비 및 관련된 제 경비 조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

○ 주요 개정 내용은

- 「신청사」에서 ⇒ 「신청사 등」으로 제명변경과
- 「신청사」⇒ 「신청사 등」으로 일부 조문변경(안 제3조 제2조 및 제6조)
- 청사 증축비 및 관련된 제 경비 신설(제3조 제4호)로서

- 어렵게 마련된 신청사 기금을 현재 증축 등 용도로 사용한다면 향후 신청사 부지매입 등 관련 경비마련 방안과 조례 개정으로 현 신청사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
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”를 “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”로 한다

제1조, 제2조 및 제6조 중 “신청사”를 각각 “신청사 등”으로 한다

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4. 청사 증축비 및 관련된 제 경비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명 : 울산광역시중구 <u>신청사</u>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중구 <u>신청사</u>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<u>신청사</u>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기금의 재원) 울산광역시중구<u>신청사</u>건립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한다)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제3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3.(생략)</p> <p>4. <신설></p> <p>제6조(기금의운용심의위원회)①<u>신청사</u>건립기금의 관리·운영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	<p>제명 : 울산광역시중구 <u>신청사 등</u>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<u>신청사 등</u> ----- -----<u>신청사 등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기금의 재원)울산광역시중구<u>신청사 등</u>----- -----.</p> <p>제3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3.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현청사 증축비 및 관련된 제 경비</u></p> <p>제6조(기금의운용심의위원회)①<u>신청사 등</u> ----- ----- -----.</p>